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배열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함
(안 제3조~제10조)

위원회 설치→기능→심의대상→구성→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회의

나.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위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단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0.~8.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종전 제4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를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를 “질병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7조를 제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

나.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

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

2. 1천만원 이상인 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
5.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중전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조 제목 “(제척·회피)”를 “(제척·기피·회피)”로 하며, 제8조(중전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제1항 중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 부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를 “용역 방법·기간 등 해당”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용역결과 공개)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 및”을 “위원,”으로 “인지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u>	<u>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1조(목적)</u> -----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 ----- ----
<u>제2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 2.~4.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 2.~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기업지원·재무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
제7조(심의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2.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 3.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 나.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 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 2. 1천만원 이상인 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 5.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시책개발과 사업추진----- -----
<u><신 설></u>	<u>제15조(용역결과 공개)</u>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u>제15조(수당과 여비)</u>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삭 제></u>
<u>제16조(비밀엄수)</u>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16조(비밀엄수)</u> ----- -----위원,----- -----알게 된----- -----